

『정액급부금』 및 『자녀양육응원특별수당』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정액급부금 및 자녀양육응원특별수당 신청의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신청서는 3월 30일부로 대상이 되는 세대앞에 보내드렸습니다.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뒤 첨부자료와 함께 동봉의 회신용 봉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의 기한은 2009년 10월 1일입니다. 우송하실 경우는 당일의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은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하기의 링크에서 정액급부금 및 자녀양육응원특별수당의 제도의 개요와 신청서의 기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하기의 정액급부금 전화상담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못 받으신 경우도 여기에 연락해 주십시오.)

또, 각 구청에도 정액급부금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월-금요일의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기타 궁금하신 점은...

사카이시 정액급부금 전화상담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072-228-1192 FAX 072-228-9255

접수시간: 토, 일, 축일을 포함 매일 오전 9시-오후 7시

정액급부금의 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정액급부금』은 시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대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급부 대상자

2009년 2월 1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시는 분

- (1) 사카이시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 (2) 사카이시의 외국인등록원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단, 재류자격이 없는 분 및 단기체류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시는 분은 제외합니다.)

또, 신청 및 급부 결정의 어느 시점에라도 재류자격이 있으며 재류하고 계시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사카이시에서는 『정액급부금』의 신청·수급에 대하여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급부액

생년월일이 서력 1944년 2월 2일 이전의 분과 서력 1990년 2월 2일 이후의 분은

1인 당 20,000 엔, 그 이외의 분은 1인 당 12,000 엔입니다.

원칙으로서 금융기관(유초은행을 포함) 계좌로 자동 대체로 지급합니다.

또, 일본국적을 소유하시는 분의 세대일 경우는 주민표상의 세대주가 신청·수급자가 됩니다. 일본국적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은 세대의 각자가 신청·수급자가 됩니다. (위임장을 통하여 동거자 등에 의한 대리 신청·수급이 인정됩니다.)

○신청 접수 기간

신청의 접수기간은 서력 2009년 4월 1일-서력 2009년 10월 1일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대상이 되시는 분 앞으로 우편으로 3월 30일에 보내드립니다.

대상이 되시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못 받으셨던 경우는 하기 전화상담창구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지급방법

원칙으로서 금융기관(유초은행을 포함) 계좌로 자동 대체로 지급합니다.

계좌가 없는 분은 각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희망하실 경우는 7월 이후 우체국의 창구에서 받으시게 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홍보 사카이, 시 홈 페이지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정액급부금의 신청수속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신청서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이나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하기의 정액급부금 전화상담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A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할 내용

○신청일

접수기간은 4월 1일-10월 1일입니다. 4월 1일 이후의 날짜를 써 주십시오.

○신청자

주소와 성명을 쓰시고 반드시 날인해 주십시오(외국인만 싸인도 가능).

인감은 막도장도 괜찮습니다.

지급을 받으실 분과의 관계를 ○로 표시해 주십시오.

세대주(외국인의 경우는 각자)가 신청하실 경우는 1에 ○를 해 주십시오.

○정액급부금의 수취방법

자동 대체를 희망하실 경우는 「1」에 ○, 현금을 희망하실 경우는 「2」에 ○를
해 주십시오.

※현금의 경우는 급부가 늦어집니다. 될 수 있는한 계좌 자동 대체를 권장합니다.

자동 대체의 경우

금융기관의 명칭, 지점명, 「보통 혹은 당좌」, 계좌번호, 명의인을 반드시 써 주십시오.

※유초은행의 계좌는 종래 우편저금에서 사용하신 「기호(5 자리수)-번호(8 자리수
이내)」를 써 주십시오.

※계좌확인서류의 복사본과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는 시에서 수정하고 복사본상의 계좌로
자동 대체하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위임장

→지급을 받으실 분 본인이 신청하실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쓰시고 어느 수속을 위임하실 것인지를 선택하셔서 세대주의 서명과 날인(막도장도
괜찮습니다)을 해 주십시오(외국인만 싸인도 가능).

B 본인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을 받으실 분(신청자)이 일본국적일 경우는 주민표상의 세대주이며 외국국적일 경우는 세대
각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자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의 복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1 신청자가 일본국적일 경우

(1) 관공서가 발행하고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예)

- 주민기본대장 카드
- 여권
- 운전면허증
- 신체장애자수첩
- 양육수첩
- 생활보호수급자증
-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
- 연금증서

소형선박조종면허증, 전기공사사면허장, 무선종사자면허증, 동력차조종자운전면허증,
운항관리자기능검정합격증명서, 업종·공기총소지허가증, 인정전기공사종사자인정증,
항공종사자기능증명서, 택지건물거래주임자증, 선원수첩, 전상병자수첩, 관공처(독립행정법인
및 특수법인을 포함)가 그 직원에 대하여 발행한 신분증명서 등

(2) 그 외

(예)

- (1)의 서류가 갱신증의 경우에 교부되는 가증명서나 교환증류

- 민간회사의 직원증·사원증이며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것
- 그 외 신청자 본인명의로 성명이 기재된 예금통장
- 신청자 본인의 성명이 기재된 공공요금의 납부필 서류

2 신청자가 외국국적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수령에 대하여》

신청자 본인(일본국적의 세대일 경우는 세대주, 외국국적일 경우는 세대 각자)이 신청하기가 곤란하실 경우, 같은 세대의 분, 친권자·성년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 그 외, 친족 또는 일상적으로 보살피고 있는 분 등이 대리인이 되셔서 대리 신청이나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수령하실 경우의 주의!!

신청자 본인 이외의 계좌로 자동 대체로 지급을 받으실 경우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신청자(지급을 받으실 분) 본인의 위임장(법정대리인 이외의 분일 경우)
-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종류)

B-1-(1)을 2 종류 또는 B-1-(1)과 B-1-(2)를 1 종류씩

(신청자 본인이 외국인일 경우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와 B-1-(1) 또는 B-1-(2)의 어느 한 쪽에 1 통)

- 대리인자신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B-1-(1)이 1 통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신청서 오른쪽 페이지 아래의 란에 기입하시든가 따로 기입하신 것을 첨부해 주십시오.

※b의 첨부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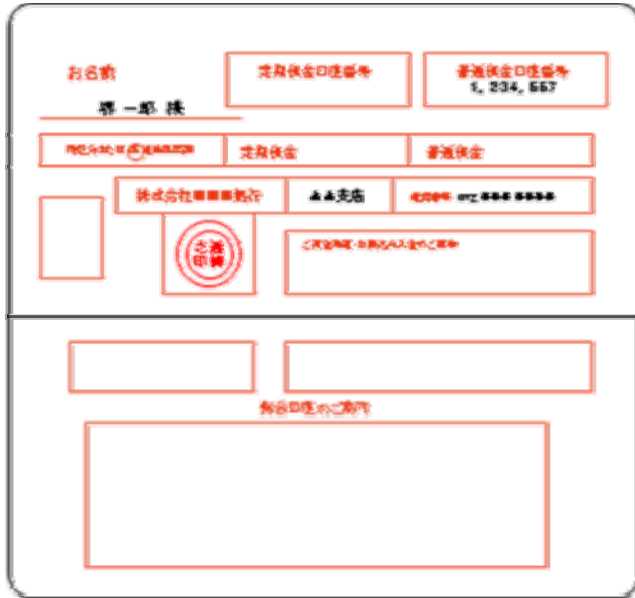
- 면허증과 여권
-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과 회사의 직원증
- 연금증서와 본인명의로의 예금통장(「B 본인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를 참조해 주십시오.)
- 생활보호수급자증과 수도요금의 「계좌대체필의 통지」(또는 수도요금을 편의점 등에서 지불했을 경우의 영수증)
- (신청자 본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와 민간회사의 사원증 등

C 금융기관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예

계좌번호 등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첨부가 없고 계좌번호 등의 기재가 틀렸을 경우나 통폐합 등에 의해 금융기관명·지점명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는 자동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늦어집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 (1) 예금·저금의 통장
- (2) 현금 카드

※유초은행의 경우, 종래의 기호·번호(5자리수와 8자리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은행 등의 예금통장이나 유초은행 저금통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통장 표지를 연 페이지에 있는
 금융기관 지점명, 계좌명이나 계좌번호가 기재된 페이지를 복사해 주십시오.



《계좌 자동 대체에 의한 지급의 흐름》

계좌 자동 대체의 경우, 신청하신 순서대로 신청서를 첨부서류에 의해 확인하고 자동 대체 수속이 완료된 것으로부터 신청자에게 자동 대체의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또, 자동 대체 시기는 4 월 16 일 이후(유초은행의 경우는 4 월 하순 이후)가 되지만, 4 월부터 5 월에 걸쳐서는 신청이 다수 집중되므로 자동 대체까지 일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현금지급의 흐름》

현금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첨부서류에 의해 확인하고 지급의 준비가 된 것으로부터 순서대로 우송으로 통지합니다. 현금은 시가 우체국에 의뢰하고 우체국 창구 등에서 받으시게 될 예정이지만, 수취의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그 통지 안에 표시해 놓습니다.

《그 외》

- 정액급부금은 2009년 2월 1일 현재 사카이시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있으신 분이 지급 대상입니다. 또, 외국국적의 분은 정액급부금의 급부를 받으실 때에 재류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이면 정액급부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류기한이 지난(또는, 갱신시기가 가까운) 분은 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우선 구청의 시민과에 변경신고를 해 주십시오.

일본국적의 분에 대하여 2009년 2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어느 시구정촌(市區町村)에도 없는 경우는 2009년 2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받으신 곳이 사카이시이면 사카이시에서 지급대상이 됩니다.

- 정액급부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정액급부금은 생활보호수급자에게도 지급됩니다. 또, 수입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단신세대이며 질병이나 장애 등에 의해 세대주 본인이 신청서를 기입하시기가 곤란하실 경우는 민생위원 등에 대필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신청으로서 본인의 금융기관계좌로 자동 대체를 희망하시면 대필자의 본인확인서류의 첨부는 불필요합니다. 대리신청 또는 대리수령을 하실 경우는 지급을 받으실 본인과 대리인 양쪽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동봉의 회신용봉투에 신청서류를 넣으시고 우표를 붙이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사카이시 정액급부금 전화상담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072-228-1192 FAX 072-228-9255

접수시간: 토, 일, 축일을 포함 매일 오전 9시-오후 7시

자녀양육응원특별수당의 제도개요 및 신청수속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자녀양육응원특별수당의 제도의 개요와 함께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하기의 정액급부금 전화상담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목적

자녀양육응원특별수당은 자녀가 많은 세대의 유아교육기의 부담에 배려하는 관점에서 이번만의 조치로서 유아교육기의 2명째 이후의 자녀 1명 당 36,000 엔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자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며 서력 2009년 2월 1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이 대상입니다.

a 사카이시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b 사카이시의 외국인등록 원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단, 재류자격이 없는 분 및 단기체류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은 제외합니다. 또, 신청 및 급부 결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재류자격이 있고 재류하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자녀

2 명째 이후의 자녀이며 생년월일이 서력 2002년 4월 2일부터 서력 2005년 4월 1일까지의 자녀이며 동시에 서력 2009년 2월 1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가 대상입니다.

a 사카이시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b 사카이시의 외국인등록 원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단, 재류자격이 없는 분 및 단기체류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을 제외합니다.)

※2 명째의 판정은 18 세 이하의 자녀(구체적으로는 생년월일이 서력 1990년 4월 2일 이후의 자녀) 안에서 연령순으로 1 명째, 2 명째로 세계 됩니다.

※대상이 되는 자녀와 첫번째 자녀가 별거하고 있더라도 같은 사람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서에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의 복사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급될 수당의 액수

대상이 되는 자녀 1 명 당 36,000 엔을 동거하고 계시는 세대주에 지급합니다.

수당의 지급은 이번만입니다.

신청의 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뒤 동봉의 회신용봉투로 하기에 서류를 반송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서류

a 신청서

b 신청자 및 수당의 자동 대체를 희망하시는 계좌명의인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의 복사본 (뒷면에 성명이나 주소 등을 변경한 기재가 있는 경우, 앞면·뒷면 양쪽의 복사본)

· 주민기본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 여권, 주민기본대장 카드 등

· 외국인등록원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외국인등록증명서

c 유초은행이나 아동수당의 자동 대체 계좌 이외로 자동 대체를 희망하실 경우

자동 대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복사본

(예금·저금통장, 현금카드 등)

d 별거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복사본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 등)

e 외국인등록원표에 등록된 자녀(생년월일이 서력 1990년 4월 2일부터 서력 2005년 4월 1일까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외국인등록 증명서의 복사본

(뒷면에 앞면의 내용을 변경한 기재가 있는 경우, 앞면·뒷면 양쪽의 복사본)

※세대주 이외의 분이 a 신청, b 수령, c 신청 및 수령하실 경우, 세대주에 의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친권자·성년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또, 대리인이 신청

또는 수령하실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양쪽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리인은 원칙으로서 세대주와 동일세대의 분입니다. 법률에 따라 인정된 권한을 소유하는 분을 제외하고 대리인이 수령하실 경우는 세대주의 본인확인서류가 2 종류 그리고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Q&A 의 Q4 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의 접수기간은 **서력 2009 년 4 월 1 일-서력 2009 년 10 월 1 일**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Q&A

**Q1. 우리 집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세대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경우의 지급처는 부모의 우리들일까요? 할아버지일까요?**

A1. 자녀양육응원특별수당은 자녀의 부모인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세대주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이면 세대주인 할아버지가 지급처가 됩니다.

Q2. 자녀양육응원특별수당은 과세대상이 되나요?

A2. 자녀양육응원특별수당의 소득세·개인주민세상의 취급은 **일시소득**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50 만엔의 특별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일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Q3. 신청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3. 자녀양육응원특별수당은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서력 2009 년 10 월 1 일**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만약에 신청기한까지 신청이 없었을 경우는 사퇴로 간주합니다.

Q4. 신청에 필요한 본인확인서류란 어떤 것입니까?

A4. 외국국적의 분의 본인확인서류는 외국인등록증명서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복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일본국적의 분(주민기본대장에 등록이되어 있는 분의 경우)의 경우는 본인확인서류로서 하기의 서류 등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1) 관공서가 발행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운전면허증·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여권·주민기본대장 카드·신체장애자수첩·양육수첩
·생활보호수급자증·연금증서 등

(2) 기타 서류

(예)

- (1)의 서류가 갱신중의 경우에 교부된 가증명서나 교환증류
- 민간회사의 직원증·사원증이며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것
- 본인명의로 성명이 기재된 예금통장
- 본인의 성명이 기재된 공공요금의 납부필 서류

《대리인을 통해서 수령하실 경우의 주의》

대리인이 수당을 수령하실 경우는 하기의 a-c 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a 세대주로 부터의 위임장

b 세대주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2종류(다음 어느 하나)

대리인이 일본인일 경우

- 상기(1)을 2종류
- 상기(1)과 (2)를 각각 1종류씩

대리인이 외국국적의 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복사본과 상기 1의 어느 하나 1통

c 대리인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일본인일 경우 상기(1)을 1통

대리인이 외국국적의 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복사본

※위임장은 신청서 왼쪽 페이지 아래의 란에 기입하시든가 따로 기입한 것을 첨부해 주십시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사카이시 정액급부금 전화상담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072-228-1192 FAX 072-228-9255

접수시간 : 토, 일, 축일을 포함 매일 오전 9시-오후 7시